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실증적 요인분석

정원열¹ 김종수[†]

- I. 서론
- II. 관련연구
- III. 연구모형 및 분석
- IV. 결론

요약

우리나라는 1991년 이후 미국과 제 9차 방위분담 특별협정을 맺음으로써 1조원에 가까운 방위비 분담금을 지불하고 있다. 이러한 규모의 분담액은 합리적 결정기준과 예산적용문제, 예산집행의 투명성, 국내여론 약화 등으로 동맹정신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방위비 분담금 지급현황과 각종 요인들을 실증자료로 구축하여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된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1991년 이후 지속적인 증액을 거듭해 오는 방위비 분담금과 경제적 상황 등의 공급적 요인과 주한미군, 북한의 도발건수 등의 수요적 요인과 국가예산 중 복지예산의 비율 등을 기타 환경요인과의 상관관계와 영향력 정도를 분석하여 주요한 요인들을 찾아내고, 분담금 규모에 대한 적정성을 찾고자 한다.

<핵심어> 방위비 분담금, 상관관계, 주한미군.

¹ 한남대학교 박사과정

[†] 한남대학교 산업공학과 교수

(교신저자 Tel : 042-629-8090 E-mail : ckim@hnu.kr)

논문접수일 : 2016년 9월 19일 게재확정일 : 2016년 10월 21일

논문수정일 : 2016년 10월 13일(1차), 2016년 10월 20일(2차)

A factor analysis of Defense Cost Sharing of the United States Forces Korea.

Jeong, Weon Yeol¹ Kim, Jong Su[†]

Abstract

Since our nation had the 9th special agreement on the budget of the United States Forces Korea(U.S.F.K) in 1991 with the United States(US), about 1 trillion won has been paid for the contribution. there are concerns that this scale of budget may cause problems in standards of rational decision making, diversion of budget, transparency of budget execution and domestic public opinion reaching to the undermining the congruence of alliance in the end.

In this circumstances, this research analysed the fact using the data of the present status of contribution to the budget of the USFK and other factors. The aim of this research is to find the validity of contribution to the budget of the USFK which has been continually risen since 1991 by analysing the correlation between variables in various dimensions.

<Keywords> *Defense Cost Sharing, Relation Analysis, U.S.F.K.*

1. 서론

최근 미 공화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는 ‘한국은 안보분야의 무임승차를 하고 있으며, 주한미군을 위해 아주 푼돈을 지급하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여러 공식적인 자리에서 즐기치게 주장하고 있다¹⁾. 사실, 우리나라는 ‘한미상호 방위조약에 따른 주둔군지위협정(SOFA: Status of Forces Agreement) 제 5조’의 예외적 조치로 미국과 체결한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Special Measures Agreement)에 근거하여 1991년부터 미군의 주둔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해오고 있다. 이후 제 9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을 거치면서 2014년도에는 무려 9,200억 원을 상회하는 금액을 방위비 분담금으로 지불하고 있다.

방위비 분담금²⁾과 관련한 대표적인 논제는 방위비 분담금의 결정방식과 재원배분, 한국측 간접지원에 대한 저평가, 방위비 분담금의 전용문제, 방위비 분담금의 제공방식 등인데, 이러한 논제들의 핵심은 방위비 분담금 규모에 대한 불만이다³⁾. 주한미군을 위해 지원되는 비용이 얼마이어야 하는가?, 지금 지불하고 있는 금액이 적정한가? 에 대한 의문은 언론과 시위를 통해 과격화되어 표현되기도 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반도에서 방위비 분담금을 얼마나 적정한가?’에 대한 선행연구로 ‘방위비 분담금은 어떠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지’ 또는 ‘무엇과 연관이 되는지’를 찾고자 한다. 방위비 분담금의 적정성 문제에서 적정성의 기준은 다양하고 정책목표나 방향설정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수치적인 기준을 제시하여 그 적정성을 분석하는 것은 제한된다. 이러한 적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는 1991년부터 2012년까지의 방위비 분담금 내역과 당해 연도 국내 경제와 안보상황을 대변하는 자료들을 변수화하여 방위비 분담금의 변화에 관련된 변수들을 분석하고 그 상관관계를 이용하여 적정성을 찾고자 한다.

2. 관련연구

동맹국간의 방위비 분담의 적정 규모를 결정하는 것은 동맹을 통한 공동의 이익 이면에 동맹국간의 이해관계에 있어 중요한 사안이며, 이로 인해 상호간 적지 않은 갈등을 겪게 된다. 동맹국간의 적정방위비 분담규모를 판단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소로서 수혜정도(benefit), 지불능력(ability), 현재까지의 기여도(contribution)등을 들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당사국들은 방위비 분담의 규모를 상호조정 및 타협하여 결정하게 된다⁴⁾.

1) 『연합뉴스』, “트럼프 한국 분담방위비는 푼돈…한국계 추정대학생 반박”, 2015. 10.13.

2) 군사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동맹국이 공동의 안보이익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소요되는 군사적·물적·경제적 제비용의 공정한 배분을 의미함

3) 국회입법조사처, “한미 방위비 분담의 현황과 쟁점”, 『현안보고서』, 4, 2008.

4) 신용수, “주한미군의 역할변화에 따른 방위비분담에 관한 연구”, 『국방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pp. 34-36.

2.1 수혜의 원칙

수혜의 원칙(benefit principle)이란 각국의 방위노력 비용을 평가하고, 또한 공동의 이익에서 개별국가의 이익을 산정하여 각국의 해당 이익분에 따라 비용을 분담하는 원칙이다. 이 수혜의 원칙은 동맹이 제공하는 이익이 국방비 부담의 근거가 되며 이 이익의 정도에 따른 비율대로 각 동맹국에 국방비를 부담할 때 가장 공평하다고 보고 있다⁵⁾. 그러나 개별국가는 실제 자신들이 누릴 수 있는 이익분 보다 작게 평가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동맹이 공급하는 안보라는 공공재에 대한 가치를 정확히 측정할 수 없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안보에 대한 가치가 약한 국가들은 무임승차(a free ride)의 경향을 지니므로 동맹에 기여하는 안보의 수준을 감소시킨다. 이러한 점들 때문에 당사국간에 방위비 분담에 대한 협상의 계기가 마련되는데 협상의 결과로는 이론만으로 예측될 수 없고 일반적으로 국가 간의 정치적 타협을 통해 결정된다.

2.2 지불능력의 원칙

지불능력 원칙(ability principle)은 국방비 부담이 각 국가의 경제적 지불능력의 정도에 따라 결정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불능력 원칙은 동맹관계에서 개별국가 간에 급부-반대급부의 관계가 인정될 수 없으므로 개별 국가가 향유하는 동맹이익의 대소에 따른 부담 배분은 불가능하여 결국 각 국가의 부담 능력의 대소에 따라 배분하는 것이 타당한 방법이라고 보고, 이의 측정지표로 국내 총생산액(GDP), 일인당 국민소득, 번영지수 등을 제시하고 있다. 지불능력의 지표를 실제 현실에 적용하고 있는 사례로는 미 국방부가 작성하여 매년 의회에 제출하는 방위비 분담 보고서를 들 수 있다.

미 국방부에서 방위비 분담을 측정하는데 활용하고 있는 각종 지불능력 지표의 내용에 따르면 한 국가의 방위비 분담액 지불능력은 ①동맹국들 중에서 국내총생산(GDP)의 점유율, ②동맹국들 중에서 인구의 점유율, ③해당국가의 번영지수(prosperity index)등을 기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중 번영지수는 미 국방부 보고서를 위해 창출된 실험적 지수로서 한 국가의 국민 총 생산액 점유율에 일인당 국민소득의 비율을 가중치로 부여하여 나타난 수치로서 상대적으로 부유한 국가는 가난한 국가보다 더 많은 방위비를 분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논리에서 개발되었다. 이것은 보다 가난한 나라의 기초적인 국내 제반 계획에 자원을 투입하고 보다 부유한 국가는 집단적인 군사부담에 보다 큰 부분을 분담하도록 함으로써 자유세계의 집단적 이익이 최선의 형태로 추구될 수 있다는 가정에 근거하고 있다. 번영지수는 미국이 NATO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기여도를 측정하는데 있어 실제 적용되고 있다.

5) 이달희, “적정 한미방위비 분담”, 『국방논집』, 15, 1991, pp. 60-87.

3. 상관관계 모형 및 분석결과

방위비 분담금의 적정성 논의를 위해 2장에서 소개된 수혜의 원칙과 지불능력의 원칙은 동맹국 간에 이익의 정도를 분석하는 것이 다분히 주관적이고, 지불능력의 원칙 측면에서는 안보상황이 배제된 채 단순한 경제상황만을 고려하여 방위비 분담금을 책정하게 되어 안보라는 본질적인 문제와 관련성이 적다.

본 장에서는 1991년 이후 방위비 분담금 지출액⁶⁾을(<표 1>참조) 한반도 경제적 요인과 북한의 위협과 주한미군 인원수의 변동 등 외부적 요인 등을 망라하여, 어떠한 요인에 의해 방위비 분담금 규모가 변화되고 그 상관관계는 어떠한지를 분석하여 적정성을 논하고자 한다

6) 박휘락, “한국 방위비분담 현황과 과제분석, 『국방정책연구』, 30, 2014, pp. 153-188.
<표 1> 참조.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실증적 요인분석

<표 1> 한국의 방위비분담 추이

연도	비용분담금	비 고
1991	1억 5,000만 달러	제1차 및 제2차 SOFA 특별협정으로 991-1995년분 체결. 전액 달러로 지급하면서 주한미군 총 주둔비용 중 미국인 인건비를 제외한 비용의 1/3 분담을 결정
1992	1억 8,000만 달러	
1993	2억 2,000만 달러	
1994	2억 6,000만 달러	
1995	3억 달러	
1996	3억 3,000만 달러	제3차 협정 1996-1998년분을 체결. 1998년은 협정상 3억 9,900만 달러였으나 외환위기로 축소하여 지급하였고, 1998년부터 절반 이상을 원화로 지급
1997	3억 6,300만 달러	
1998	3억 1,400만 달러	
1999	3억 3,900만 달러	제4차 협정 1999-2001년분 체결 .
2000	3억 9,100만 달러	
2001	4억 4,400만 달러	
2002	4억 7,200만 달러	제5차 협정 2002-2004년분 체결. 원화지급 88%로 상승
2003	5억 5,700만 달러	
2004	6억 2,200만 달러	
2005	6,804억 원	제6차 협정 2005-2006년분 체결. 2005년부터 전액 원화로 지급
2006	6,804억 원	
2007	7,255억 원	제7차 협정 2007-2008년분 체결.
2008	7,415억 원	
2009	7,600억 원	제8차 협정 2009-2013년분 체결.
2010	7,904억 원	
2011	8,125억 원	
2012	8,361억 원	
2013	8,695억 원	

3.1 변수 설정

방위비 분담금은 어떠한 요인에 의해 변화될 것인가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 국가방위 차원에서 전쟁억지력을 보유하기 위해서 그 수준이 결정될 것이고, 안보상황이 우선시 되어 국가예산이 국방비에 편중되지 않을 것이고 국가차원의 정책의 우선순위도 연관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식으로 방위비 분담금과 상관관계가 높은 요인들을 공급적, 수요적, 기타환경적 요인과 같이 세 가지 차원으로 분석하였다.

3.1.1 공급적 요인

국가의 자원능력을 가장 잘 나타내는 국방비의 변화, 경제상태를 가늠할 수 있는 물가상승률의 변화와 실업률의 변화를 변수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국방비의 실제적인 예산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국방비를 방위력개선비와 경상운영비로 구분하여, 영향력을 살펴보기로 한다⁷⁾. 이러한 공급적 요인의 변수들의 선정은 국가의 정책도 한 국가의 경제 능력과 경제상태를 고려하지 않고는 실행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국방서비스는 다수의 공급자와 수요자가 있는 시장에 의해 공급되는 것이 아니라, 중앙기구에서 독점적으로 공급되는 것이 특징이므로 그 독점적 공급자의 재정적 능력과 상태야말로 총공급량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가의 경제적 능력을 나타내는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실업률의 변화는 방위비 분담금의 규모결정에 정(+)⁷⁾의 관계를 가질 것으로 가정한다. 그리고 방위비 분담금의 직접적 지원예산인 국방비는 정(+)⁷⁾의 관계를 가지되, 국방비를 구성하는 방위력 개선비와 경상운영비는 각각 경합관계를 가질 것으로 가정한다. 변수의 영향력에 대한 가정 사항 중 물가상승률의 변화는 방위비 분담금 규모와 정(+)⁷⁾의 관계를 가지는 이유는 물가가 상승할수록 국방분야에 소요되는 자원을 구입할 실질구매력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매년 동일한 방위비 분담금 효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방위비 분담금의 규모가 증가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실업률이 증가하게 되면 국가는 경제적 불안정성과 불완전 고용상태가 발생하며, 주한미군에 근무하는 한국군로자도 상당하기 때문에(실제로 방위비 분담금의 사용내역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약 47%차지) 방위비 분담금 규모를 늘려 유효수효를 창출할 것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대통령, 경제관료, 여당이 막강한 정책추진능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에서는 유효수효 창출을 통해 실업률을 감소하기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방위비 분담금 규모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3.1.2 수요적 요인

7) 이영주, “국방비 지출의 결정요인과 경제적 효과에 관한 실증적 연구”, 『인제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2.

수요적 요인으로 북한의 도발행위 건수와 주한미군 인원수를 선정하였다. Richardson의 군비경쟁모형은⁸⁾ 상대국의 위협과 이에 대한 반응으로 방위비가 결정된다는 이론을 제시하고 있다. 이 이론을 고려했을 때 북한의 도발행위와 이에 대한 대응방안인 주한미군의 존재와 관련성을 살펴볼 수 있다⁹⁾. 주한미군의 전략적 역할 중 한반도 안보유지와 북한의 도발 억제에 있는데, 국지적으로 발생하는 북한의 도발행위 증가는 방위비 분담금 규모와 정(+)의 관계를 갖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방위비 분담금이 주한미군의 운영유지비임을 고려할 때, 직접적인 소요가 되는 주한미군의 인원수는 방위비 분담금 규모와 강한 정(+)의 관계를 갖을 것으로 판단된다.

3.1.3 기타 환경적 요인

기타 환경적 요인들로는 복지예산 변화율이다¹⁰⁾. 방위비 분담금 즉 국방부문에 국가재정의 확대는 여타 다른 부문으로의 재정지출을 억제하는 기능을 할 수 밖에 없고, 특히 교육, 보건, 사회복지와 관련된 지출과 상호경합(trade off)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국가 예산 중 복지부문의 증가는 방위비 분담금 규모 증가와 부(-)의 관계를 가질 것이라고 가정한다.

8) Richardson, L, F(1940), Generalized Foreign Politics, *British Journal of Psychology*, Vol 23.

9) 함성득, “한국 방위비 결정모형의 새로운 모색”, 『전략논총』, 11, 1999, pp. 29-30.

10) 국방비와 사회복지예산과의 상충관계에 대해 연구가 활발한데, 먼저 김영규(1997)와 목진휴(1993) 등은 사회복지예산과 국방예산사이에 상충관계가 나타나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3.2 실증적 자료구축 / 소개

1991년 이후 2013년까지 축적된 시계열 자료는 21개 년도의 자료로 구성하여, 변수는 3가지 차원으로 공급적 요인, 수요적 요인, 기타 환경적 요인으로 분류하였다. 앞 절에서 소개된 변수는 아래 <표 2>와 같이 변형하여 실증적 자료를 구축하였다.

<표 2> 변수의 설명

구 분		변수 설명	단 위	비 고	
종속변수	$DCS_{\Delta t}$	방위비 분담금 변화율	%	과거 1년 대비, 변화율	
독립 변수	공급 요인	$DE_{\Delta t}$		국방비 변화율	과거 1년 대비, 변화율
		$WE_{\Delta t}$		경상운영비 변화율	과거 1년 대비, 변화율
		$IE_{\Delta t}$		방위력개선비 변화율	과거 1년 대비, 변화율
		$ER_{\Delta t \sim 2}$		경제성장률	과거 2년 평균 변화율
		$PR_{\Delta t \sim 2}$		물가상승률	과거 2년 평균 변화율
		$UR_{\Delta t \sim 2}$		실업률	과거 2년 평균 변화율
		수요 요인		$US_{\Delta t}$	주한미군 인원수 변화율
$NP_{\Delta t}$	북한도발 건수 변화율			과거 1년 대비, 변화율	
기타 요인	$GW_{\Delta t}$	복지예산 변화율		과거 1년 대비, 변화율	

방위비 분담금은 국가의 예산결정과정에 의해 지원되는 예산으로서 예산편성 구조상 각 변수들 간 영향력 지체현상(Time Lag)이 고려된다. 북한의 도발건수와 주한미군 인원수는 2년 치의 평균자료보다는 방위비 분담금 규모를 판단하는 연도에서 발생한 도발건수와 주한미군의 인원수가 직접적인 영향요소가 크기 때문에 1년을 고려하였고 나머지 변수들은 국가예산의 경향성을 고려하여 2년을 고려하였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실증적 요인분석

<표 3> 연도별 방위비 분담금 영향요인

단위 : %

구분	DCS _{△t}	DE _{△t}	WE _{△t}	IE _{△t}	ER _{△t-2}	US _{△t}	NP _{△t}	PR _{△t-2}	UR _{△t-2}	GW _{△t}
1992	21.6	12.5	15.5	7.9	9.7	-15.2	122.2	6.2	2.5	11.6
1993	29.8	9.6	11.6	6.4	5.8	0.0	10.0	4.8	2.9	12.1
1994	22.8	9.3	11.5	5.7	6.3	0.0	-4.5	6.3	2.5	12.7
1995	15.4	9.9	9.9	10	8.8	0.0	81.0	4.5	2.1	11.9
1996	3.2	10.6	12.3	7.4	8.9	0.0	-28.9	4.9	2	20.0
1997	17.3	12.6	11.6	4.5	7.2	-1.5	3.7	4.4	2.6	13.6
1998	40.6	0.1	-2.2	4.2	5.8	1.3	-42.9	7.5	7	8.8
1999	8.1	0.4	-2.2	2.8	-5.7	0.0	-12.5	0.8	6.3	7.6
2000	6.2	5.3	7.2	2.2	10.7	1.8	-50.0	2.3	4.1	14.3
2001	2.9	6.3	11.4	-2.1	8.8	1.3	242.9	4.1	4	38.0
2002	27.0	6.3	7	5	4	0.0	4.2	2.8	3.3	2.6
2003	9.2	7	8.2	4.8	7.2	0.0	48.0	3.5	3.6	10.8
2004	11.7	8.1	7.4	9.7	2.8	-13.3	-13.5	3.6	3.7	4.5
2005	-8.9	11.4	9.1	16	4.6	-9.2	-21.9	2.8	3.7	13.6
2006	0.0	6.7	6.3	7.7	4	-3.4	32.0	2.2	3.5	11.9
2007	6.6	8.8	6.7	15	5.2	0.0	0.0	2.5	3.2	9.3
2008	2.2	8.8	6.5	15	5.1	0.0	-12.1	4.7	3.2	11.1
2009	2.5	8.7	6.7	13.6	2.3	0.0	62.1	2.8	3.6	17.9
2010	4.0	2	0.8	4.7	0.3	0.0	-78.7	3	3.7	1.2
2011	2.8	6.2	6.6	5.4	6.3	0.0	80.0	4	3.4	6.3
2012	2.9	5	5.9	3.0	3.7	0.0	5.6	2.2	3.2	8.2

*적정 국방비 분석 연구, 2013,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p85, p86, p87 인용, 경제성장률의 수치는 통계청 자료(2016. 5월 기준)를 인용하여 수정함.

3.3 상관분석 결과

방위비 분담금 변화율의 영향요인을 관련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SPSS를 통해 살펴보았다. 앞 절에서 소개된 변수들간의 변화정도와 방향은 피어슨 계수¹¹⁾(Pearson Product correlation coefficient)로 표현하였다. 그 결과 방위비 분담금 변화율 변수들은 물가상승률, 실업률, 경제성장률, 순으로 정(+의 관계를 나타내었다. 복지예산은 가정한 대로 부(-)의 관계를 나타냈지만, 북한의 도발건수, 주한미군인원수는 예상과 달리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방위비 분담금 변화율의 영향요인 중 물가상승률($PR_{\Delta t \sim 2}$)과 상관관계가 0.630으로서 비교적 높게 나왔고, 나머지 변수들의 상관관계는 모두 0.5이하였다.

<표 4> 방위비 분담금 변화율 영향요인 간의 상관관계 분석

구분	$DE_{\Delta t}$	$WE_{\Delta t}$	$IE_{\Delta t}$	$ER_{\Delta t \sim 2}$	$US_{\Delta t}$	$NP_{\Delta t}$	$PR_{\Delta t \sim 2}$	$UR_{\Delta t \sim 2}$	$GW_{\Delta t}$
$DCS_{\Delta t}$	-.108	-.021	-.276	.150	.049	-.082	.630**	.185	-.230
$DE_{\Delta t}$	1	.891**	.490*	.534*	.492*	-.434**	.254	-.813**	.272
$WE_{\Delta t}$	·	1	.115	.704**	-.344	.468*	.326	-.822**	.460*
$IE_{\Delta t}$	·	·	1	-.073	-.342	.226	-.025	-.281	-.208
$ER_{\Delta t \sim 2}$	·	·	·	1	-.029	.351	.538*	-.494*	.451*
$US_{\Delta t}$	·	·	·	·	1	-.099	-.114	.173	.160
$NP_{\Delta t}$	·	·	·	·	·	1	.132	-.192	.656**
$PR_{\Delta t \sim 2}$	·	·	·	·	·	·	1	-.121	.152
$UR_{\Delta t \sim 2}$	·	·	·	·	·	·	·	1	-.118
$GW_{\Delta t}$	·	·	·	·	·	·	·	·	1

** 상관관계가 0.01수준에서 유의

* 상관관계가 0.05수준에서 유의

실증적인 분석결과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방위비 분담금의 변화율에 영향요인이 수요적 요인보다는 공급적 요인에 기인한다는 것이다. 주한미군의 한반도 안정화 및 전쟁 억제기능을 고려할 때는 북한의 도발건수와 주한미군의 인원수가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낼 것 같지만 그러하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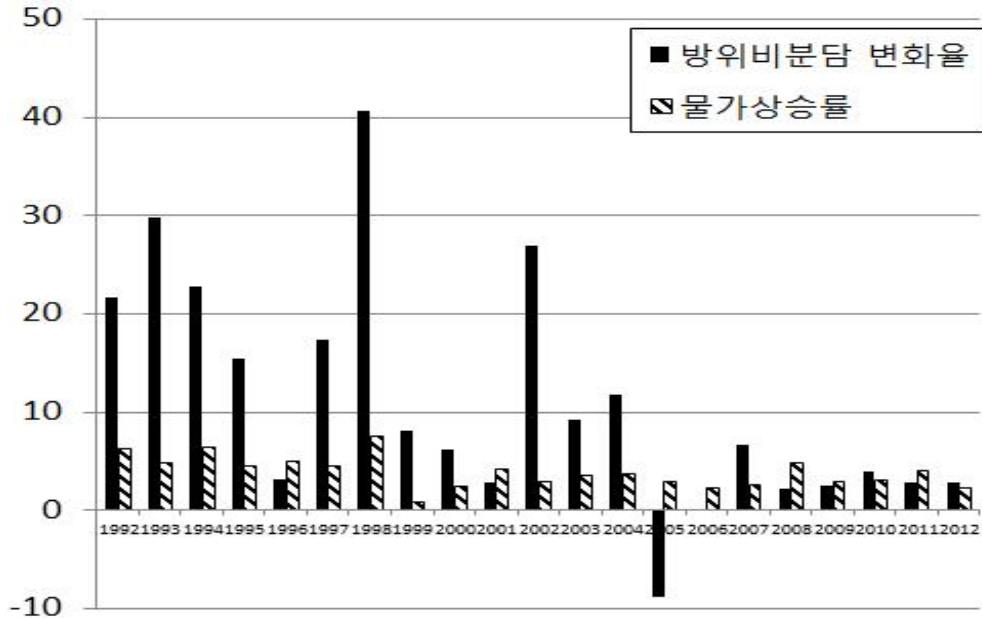
공급적 요인으로 고려된 국방비 관련변수 3가지(Δ 국방비, Δ 경상운영비, Δ 방위력개선

$$11) r = \frac{\sum(x - \bar{x})(y - \bar{y})}{\sqrt{\sum(x - \bar{x})^2 \times (y - \bar{y})^2}}$$

r : x 와 y 의 표본상관계수, \bar{x} , \bar{y} : x 와 y 의 표본평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실증적 요인분석

비)와 경제 관련변수 3가지(Δ 경제성장률, Δ 물가상승률, Δ 실업률) 중 상관관계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는 물가상승률이었다. <그림 1>에서 보듯이 방위비 분담금이 최고치를 기록한 1999년과 최저치를 기록한 2005년도에 물가상승률은 7.5%와 2.8%의 수치를 기록하는데, 실증적 자료를 통해서 보면 물가 7.5%는 물가변화 중 최고치이며 2.8%는 최저치는 아니지만 낮은 값에 해당되어 그래프를 통해서도 그 상관관계가 높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림 1> 방위비분담금 vs 물가

물가상승은 실질 구매력 저하를 가져오고 이러한 현상을 막기 위해 예산을 증액한다는 가정을 하였는데,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서 증명되었다. 주한미군의 운영에 지급되는 방위비 분담금 중 많은 금액이 구매행위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구매력등이 경제변화로부 터 안정되게 유지하게 하려는 정책 의지로 볼 수 있다.

공급적 요인 중 국방비 관련 3가지 변수는 상관관계가 유의미하지 않는데, 이것은 방위비 분담금이 국방비에서 지급은 되지만 국방비가 결정되는 요인과 방위비 분담금이 결정되는 요인이 다를 수 있다. 공급적 요인 중 경제변수 중 경제성장률과 실업률은 관련성이 낮게 나온다. 경제성장률은 국방비 또는 경상운영비와는 강한 정(+)의 관계와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경제성장이 안정된 가운데 현 체제를 유지하려는 목적이 국방비 특히 국방력을 유지시키는 예산인 경상운영비와 강한 상관관계(.704)에서 드러난다. 실업률은 방위비 분담금 또는 국방비 관련 예산과 상관관계가 낮은데, 실업률 극복을 위한 예산증액 대상이 국방관련 예산이 아님을 의미한다.

수요적 요인으로 분류한 변수 중 주한미군 인원수는 방위비 분담금의 실질적인 수혜대상이고 북한의 도발건수는 실질적 위협요소로 상관관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하지만 주한미군 인원수의 변화는 실증적 자료 21건 중 13건이 0%이다. 반면 방위비 분담금 변화율은 상당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방위비 분담금의 실질적 수혜대상이 주한미군은 맞지만 주한미군 인원수가 주한미군의 운영을 위한 예산편성을 대응하는 변수로 적당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북한의 도발건수는 북한의 위협에 따른 예산 증가를 설명하는 대응변수이나, 상관관계 결과를 볼 경우에는 북한의 위협 건수의 증가가 방위비 분담금의 증액을 가져오지 못하고 있다. 북한의 도발건수가 국방비 변화와 부(-)의 관계로 통계적 의미를 갖는 것을 고려해보면, 도발건수의 합이 많다고 해서 곧바로 정부가 위협을 느껴 국방관련 예산을 증액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기타 환경적 요인인 복지예산 증가율은 국가 예산편성에 있어 상호경합성을 고려하였으나 방위비 분담금 또는 국방비와는 상호경합성이 발견되지 않았다.

4. 결론

4.1 연구결과

방위비 분담금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기 위해 1992년부터 2012년까지 21건의 실증적 자료를 공급적, 수요적, 기타 환경적 요인에서 접근하였는데,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정과 연구결과는 차이가 많이 발생하였다.

<표 5> 분석결과 요약

독립변수			종속변수 (분담금 증가율, $DCS_{\Delta t}$)	
범주	변수명	의미	가정	분석결과
공급적 요인	$DE_{\Delta t}$	국방비 변화율	+	n.s
	$WE_{\Delta t}$	경상비 변화율	+	n.s
	$IE_{\Delta t}$	방위력개선비 변화율	+	n.s
	$ER_{\Delta t-2}$	경제성장률	+	n.s
	$PR_{\Delta t-2}$	물가상승률	+	+
	$UR_{\Delta t-2}$	실업률	+	n.s
수요적 요인	$NP_{\Delta t}$	북한도발 건수 변화율	+	n.s
	$US_{\Delta t}$	주한미군 인원수 변화율	+	n.s
기타 환경적 요인	$GW_{\Delta t}$	복지예산 변화율	-	n.s

* +, - :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 부(-)의 관계

* n.s :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없음

방위비 분담금의 변화는 직접적 예산출처인 국방비의 변화와 관련이 적었으며, 실질적 수혜대상인 주한미군이 주한미군 인원수로는 관련성이 설명되지 않았고, 북한의 도발건수 역시 방위비 또는 국방비와도 정(+)의 관계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분석되지 않았다. 제한된 국가예산의 고려했을 때 예산편성시 상호경합성을 기대했던 복지예산과도 유의미한 부(-)의 관계도 설정되지 않았다.

다만 물가상승률이 방위비 분담금 변화에 정(+)의 관계로 통계성 유의성을 나타내었다. 이렇게 방위비 분담금의 변화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요인이 적은 것은 방위비 분담금의 결정을 5년 단위 또는 2년 단위로 실시하는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으로 하기 때문이다. 특별협정 테이블에서 한·미 양국의 상호이해관계와 상호동맹의 본질적 가치를 추구하는 과정의 산물인 방위비 분담금은 상관관계분석이라는 수치적 접근으로 변화요인을 찾기에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4.2 연구 시사점

방위비 분담금 변화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된 물가상승률은 관계지수가 0.63으로 높게 나오지만, 3가지 차원에서 9개 변수를 통해 얻고자 했던 분석의도와는 크게 부합하지 않는다. 상관관계분석은 방위비 분담금의 규모를 수혜의 원칙과 지불능력의 원칙으로 판단하기에는 주관적이고 안보 관련성이 적다는 한계 때문에 시도한 분석이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거시경제규모를 반영한 공급적 요인, 안보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반영한 수요적 요인과 기타 환경요인과도 상관관계를 갖지 못했다.

그리고 주요한 요인으로 도출된 물가상승률은 그다지 새롭거나 큰의미를 주지 못한다. 상관요인으로 분석된 물가상승률은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상에서 명시된 조건에서도 발견할 수 있었다. 제 8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2009~2013)문에서 「'10~'13년 지원분은 전년도 지원분에 전전년도 물가상승률만큼의 증가금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고 명시하였다. 최근의 제 9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2014~2018)문에서도 「'15~'18년 지원분은 전년도 지원분에 전전년도 물가상승률만큼의 증가금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고 명시하였다. 협정문의 내용과 별개로 진행된 상관관계 분석의 결과가 방위비분담 특별협정내용과 일치한다는 것은 상관분석 모형이 협정문의 논리를 수치적으로 해석했다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상관관계 분석은 방위비 분담금의 변화는 물가상승률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가진다는 것을 분석하였으나, 논문에서 밝히고자 했던 방위비 분담금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한계를 가지고 있다.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요인분석은 방위비 분담금을 본격적으로 지급했던 1991년 최초 지급액에 대한 타당성을 판단할 수 없기에, 변화율에 대한 분석은 그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방위비 분담금의 적정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상관관계 분석을 넘어서, 해마다 지급되는 방위비 분담금이 한반도의 안보상황과 경제, 사회의 여건을 고려했을 때 적정성을 논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요구된다.

참 고 문 헌

○ 저서 및 논문

- [1] 국회입법조사처, “한미 방위비 분담의 현황과 쟁점”, 『현안보고서』, 2008, 4.
- [2] 김기홍,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6
- [3] 김영규, “우리나라 국방비 규모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8(1), 1997.
- [4] 권현철, “주한미군의 가치 추정: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체비용 추정”, 『국방연구』, 54(2), 2013.
- [5] 목진휴, “한국 안보부담이 사회·경제분야의 기능에 초래한 영향-시계열 자료를 이용한 다단계 동시방정식 분석”, 『안보학술논집』, 4(2), 1993.
- [6] 박휘락, “한국 방위비분담 현황과 과제분석”, 『국방정책연구』, 30(1), 2014.
- [7] 변진호·최문섭, “해외 프로젝트 파이낸스 투자 사례와 실물옵션기반 투자 의사결정”, 『대한산업공학회지』, 39(5), 2007.
- [8] 이달희, “적정 한미방위비 분담”, 『국방논집』, 15, 1991.
- [9] 이영주, “국방비 지출의 결정요인과 경제적 효과에 관한 실증적 연구”, 『인제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2.
- [10] 이철기, “미국의 방위비 분담요구의 문제점과 대안”, 『국방위원회 정책보고서』, 2006.
- [11] 정원열·채원영·최문섭(2015), “실물옵션에 기반한 한·미국방예산 분담금 적정성 검증”, 『대한산업공학회지』, 41(3), 2015.
- [12] 함성득, “한국 방위비 결정모형의 새로운 모색”, 『전략논총』, 11, 1999.
- [13] Richardson, L, F. “Generalized Fregin Politics”, *British Journal of Psychology*, Vol 23, 1940.